웹툰테마파크 캐릭터 조형물 제작설치 과업지시서

2025. 8.

한 국 만 화 영 상 진 흥 원
만 화 산 업 팀

웹툰테마파크 캐릭터 조형물 제작·설치 과업지시서

만화 이미지 및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부천의 만화도시 이미지 브랜드 강화 및 부천형 만화 콘텐츠 가치 창출

Ⅰ 과업개요

1 과업목적

○ 만화도시 부천의 진입관문인 중동IC 인근 소공원에 만화 이미지 및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만화도시 이미지 브랜드 강화

○ 시민의 일상 공간 속에 만화 콘텐츠를 노출하고 시민 참여형 캐릭터를 제작·설치하여 부천형 만화 콘텐츠 가치 창출

2 과업개요

❍ **(과 업 명)** 웹툰테마파크 캐릭터 조형물 제작·설치

❍ **(과업기간)** 착수일로부터 ~ 2025. 12. 15.

※ 본 과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❍ **(과업예산)** 93,000,000원(VAT포함)

❍ **(과업범위)** ① 공간적범위 : 부천시 중동IC 인근 3개소

1. 상동 시민의강 북측(외길수산)
2. 상동 시민의강 남측(폴라리스호텔)
3. 상동육교 상단(벤치 설치 구역)

② 내용적범위 :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에 의한 조형물 12개의 제작·설치









Ⅱ 과업내용

1 과업방향

○ 선정된 캐릭터의 3D모델링 및 디자인 등 사전 설계 과정을 거쳐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시행

○ 조형물 등의 설치, 주변정비 작업 등 모든 설치 관련 공사 실시

○ 캐릭터 제작자(기관)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3D 모델링 등 설계 및 시공, 구조물 안전성 확보

○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협의 반영

2 과업내용

○ **(설치장소)** 부천시 중동IC 인근 3개소

❍ **(제작내용)** 부천 핸썹 등 지정된 캐릭터 12개 및 안내 명판(금속 재질) 12개

❍ **(제작규격)** 높이 1500mm 내외

○ **(색　　상)** 각 캐릭터별 지정 색상

❍ **(제작재질)** FRP합성수지

○ **(마　　감)** 내부 프레임(골조) 삽입 및 외부 칼라별 우레탄 도색

○ **(고정방식)** 설치 장소에 따라 하부 각관 매설 몰탈 고정 또는 앵커볼트로 지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, 지지 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 후 설치

○ **(장소별 제작·설치 조형물)**

<table>
<tr><th>설치장소</th><th colspan="3">제작·설치 캐릭터(5종)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
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안녕 핸썹</td><td>뿌부(BIAF)</td><td>헤르(부천FC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상동 시민의강 북측(외길수산)</td><td></td><td></td><td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>보라(부천FC)</td><td>만덕이(BICOF)</td></tr>
</table>

설치장소	제작·설치 캐릭터(4종)			
	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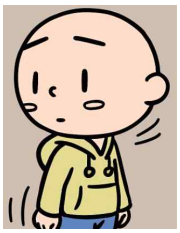	
상동 시민의강 남측(폴라리스호텔)	뭉크	벨라	이야기군	로드

설치장소	제작·설치 캐릭터(3종)		
			
상동육교 상단	고강본동 <고리산이>	송내1동 <복숭이>	춘의동 <진스타>

❍ **(설치시기)**
- 시민의강 남측 및 상동육교: 11월
- 시민의강 북측: 12월

❍ **(심의협조)** 부천시의 공공조형물 심의를 위한 3D모델링 이미지, 제작 및 설치 도면, 배치도 등 심의도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❍ **(캐릭터사용)** 캐릭터 사용에 따른 비용 포함

Ⅲ 과업수행 지침

1 일반사항

❍ 과업수행사는 본 과업의 목적, 취지,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.

❍ 과업수행사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

고,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며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,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, 규정을 따르거나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.

○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○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 예산 안에서 수행한다.

○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.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(소속, 직급, 성명, 연령, 학력, 소지자격, 담당업무 등)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, 착수내역, 현장대리인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○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하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지만,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다.

2 과업의 변경

○ 과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지시서상의 예측 내용과 달라진 경우, 기타 불가피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계약범위, 비용 및 기간 등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○ 과업변경에 따른 과업수행자의 담당 직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3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사항

○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대표 및 과업에 참여하는 담당 직원 전체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,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공사의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.

○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성과품 납품 시 성과품 이외의 잔량과 폐기물 등은 반드시 소각 폐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관련 법령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.

○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, 상표권, 초상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개발한 최종산출물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
○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에 금전적, 정신적, 법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.

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○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-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
- 과업수행 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공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-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
- 과업수행자의 수행능력이 수준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·오차가 있을 경우
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
○ 사업비의 단가적용,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견 시기에 무관하게 감액 또는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.

5 작업인원 및 안전조치

○ 현장의 안전관리상 일반인 및 현장종사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과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.

○ 착공과 동시에 현장 노무자에게 안전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.

○ 본 작업장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.

○ 현장 내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원을 임명,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·운영한다.

○ 안전, 보안, 위생, 인적 및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,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(민·형사상 및 변상 등)을 과업수행자가 진다.

○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「한국만화영상진흥원 도급·용역·위탁사업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계획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제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※ 평가표의 점수가「고용노동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」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하며,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급업체에 안전보건관리 수준 보완 요청 및 재평가 실시

○ 작업현장 관리는 근로기준법, 근로안전관리규정, 기타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6 기타사항

○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, 보완 등이 필요할때는 과업수행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○ 가격제안서 작성 시 중복되는 부분의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

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작성한다.

○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부득이하게 시설물 등을 파손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공을 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민원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.

○ 관계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협상 중이나 계약 체결 후라도 과업을 취소, 변경할 수 있다.

○ 본 과업의 사업비에는 현장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를 포함한다.

○ 사업비는 과업완료 후 정산조치하되, 과업이 완료한 후에는 추가 금액은 청구할 수 없으며, 과업완료 후라 하더라도 과다계상액은 환수조치할 수 있다.

Ⅳ 과업보고

❍ 착수보고 :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

- 착수계, 과업수행계획서, 인력투입계획, 예산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

❍ 수시보고 :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기타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

❍ 최종보고 : 과업종료시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

- 완료계, 집행내역서, 3D 모델링 이미지, 공정 사진 등 자료 일체(USB), 조형물 등